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도입배경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회적 여건변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정부에서 재활용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199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 89.0%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재활용 용도는 성토·복토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기층용, 콘크리트용 골재 등과 같이 경제적가치가 높은 용도로의 재활용은 <표 1>에서와 같이 약 14%에 머물고 있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양질의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사회적 기반이 미비하고, 품질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인하여 수요자의 자발적인 사용분위기가 미흡한 이유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그 동안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관리함으로써 고부가가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던 점도 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표 1>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고부가가치 용도 재활용 현황(2003)

구 분		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발생량		6,068	5,075	993
고부가 가치용도	소 계 (재활용율)	847 (13.9%)	686 (13.5%)	161 (16.3%)
	도로기층용	800	656	144
	아스팔트혼합물	8	0	8
	도로아스팔트	9	4	5
	유화아스팔트	2	2	0
	콘크리트제조	6	6	0
	콘크리트제품	22	18	4
기타용도	성토용 등	5,221 (86.1%)	4,389 (86.5%)	832 (83.7)

그러나, 최근 어장피해, 환경과피 등의 사유로 주민, 환경단체들이 천연골재 채취를 금지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골재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사회적인 여건변화와 순환골재를 천

연골재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는 품질향상과 맞물려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2004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골재 소요량이 2억5천만^m에 달하며, <표 1>와 같이 개발 가능한 골재 부존량(55억^m)을 고려할 때 20년 후 골재자원의 고갈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천연골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으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표 2> 천연골재의 부존량 및 개발가능량(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2)

(단위 : 백만^m)

구분	총 광		하천골재		바다골재		산림골재	
	부존량	개발가능량	부존량	개발가능량	부존량	개발가능량	부존량	개발가능량
수량	10,217	5,538	2,015	1,006	3,245	1,173	4,957	3,358
		100%		18.2%		21.2%		60.6%

이러한 여건변화로 인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도 종전의 단순 성토용·복토용 재활용 골재의 생산에 머물지 않고 고부가가치의 순환골재를 생산하기 위한 자발적인 투자 및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표 3>과 같이 양질의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3차 파쇄시설 이상의 고도처리 시설을 설치한 업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표 3> 파쇄시설 설치변화

구분	1차파쇄	2차파쇄	3차파쇄이상
'01년	12(24%)	23(46%)	15(30%)
03년	1(2%)	22(44%)	27(54%)

※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회원사 50개소 조사(2003)

따라서 다량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여 양질의 순환골재를 생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보호 뿐 만 아니라 천연골재의 대체재로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과 시대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게 되었다.

2.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법체계의 다원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체계가 「폐기물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축법」, 「건설폐기물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고, 담당부서도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로 이원화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순환골재 용도나 재활용촉진에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 고시나 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어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사용의무화를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태이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의 감량 및 적정처리와 재생골재의 사용촉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다원화된 법률 및 관리체계를 체계화시킬 필요가 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관리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단일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어 2003년 12월 31일 동 법률이 제정되게 되었다. 다만, 건설폐기물에 국한한 관리는 다른 여러 가지 폐기물과의 상호 연계성으로 인하여 단일 법률화하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현재의 법률체계가 진정한 의미의 단일 법률로 보기에 미진한 점도 있다. 따라서 법운영의 편리성과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초기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더욱 발전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제2장 주요내용

이 법률은 제1장 총칙, 제2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강구,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제4장 건설폐기물처리업, 제5장 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 제6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등 총66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총칙

○ 건설폐기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이상의 폐기물로서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할 때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폐금속류, 폐유리, 건설폐토석(건설공사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혼합건설폐기물(제1호 내지 제13호의 건설폐기물중 2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으로서 건설폐토석을 제외한다) 등 14개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로는 크게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건설공사용 순환골재(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 용도로 쓰이는 것에 한한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

· 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복토용 순환골재,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순환골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성토용 순환골재(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중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중 4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중 1킬로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등 6개 공사이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강구

□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 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건설폐기물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순환골재 생산·사용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활용시책, 순환골재 생산 및 수급에 관한 정보관리 등이다.

또한,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술, 순환골재의 생산·수요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계를 갖추고 재활용촉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배출자가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용역이행능력은 자본금·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용역이행 실적 등에 따라 평가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계약의 형식에 의한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은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단, 2006년 12월31일까지는 500톤 이상인 건설공사)

4. 건설폐기물처리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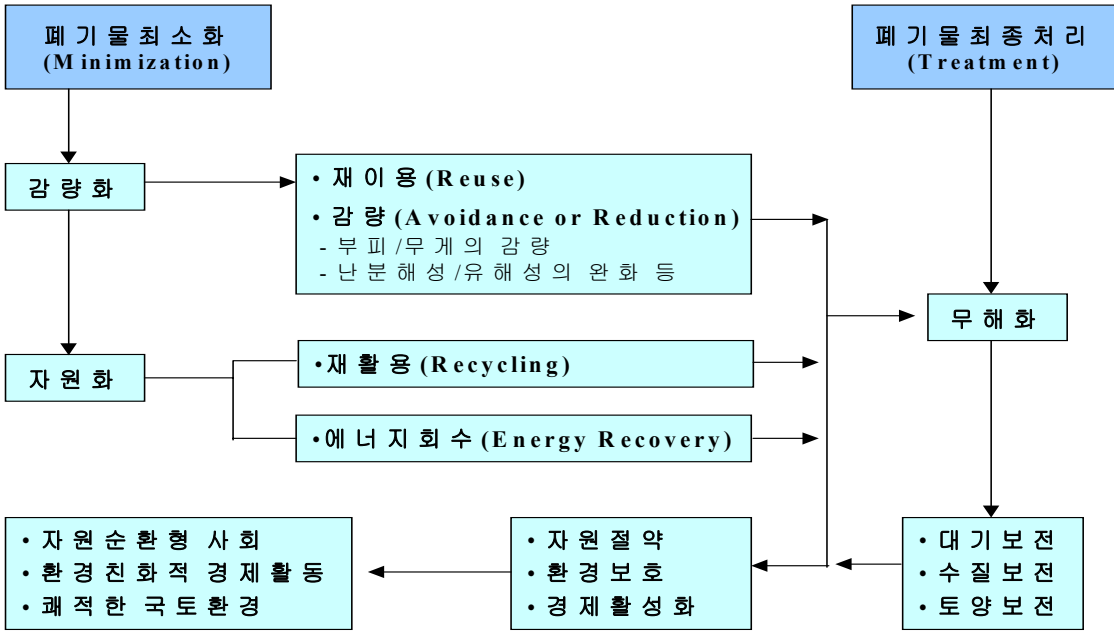
배출자가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건설폐기물처리기준 및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하는 것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하며, 당해 건설공사현장이외에서 재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5.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 촉진

□건설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발주자는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건설업자에게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순환골재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또는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환골재의 수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가 완료된 경우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당해 건설공사의 인·허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추진방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은 국가 폐기물관리정책의 큰 틀에 기반을 두고 계획되어 오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2002년 4월 확정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2002~2011)에 의하여 향후 10년간의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 종합계획의 정책목표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기반 확립」이며, 이에 대한 추진전략을 '폐기물 최소화정책의 지속 추진', '폐기물 자원화 정책의 강화' 그리고 '폐기물의 안전처리 및 관리강화'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한 기본개념은 <그림 1>과 같이 자원순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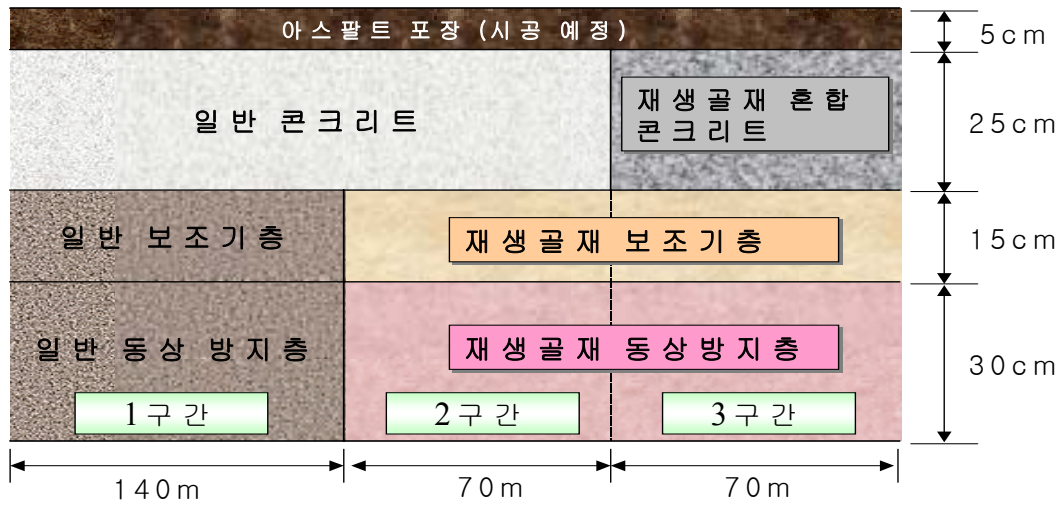
<그림 1>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개념도

따라서 건설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정책도 국가폐기물관리종합정책의 자원순환정책에 기본을 두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폐자원을 고부가가치의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및 하위법령을 제정·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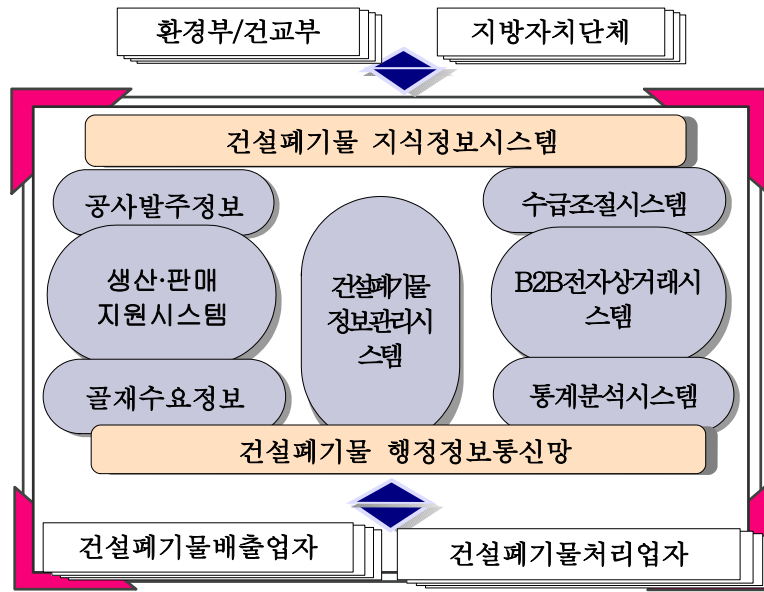
둘째, 순환골재에 대한 수요자의 부정적인 인식해소를 위하여 순환골재의 안전성·내구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2003년 4월부터 추진하여 오고 있다.

주요 시범사업으로는 <그림 2>와 같이 남양주진건하수처리장 진입도로의 기층,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에 순환골재를 실적용하여 2004년 4월 준공하였으며, 한강수계정비사업의 하수관거에 모래기초 등을 순환골재로 실적용한 연구용역을 2004년 12월에 준공하여 순환골재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림 2> 도로의 순환골재적용

셋째, <그림 3>과 같이 순환골재의 생산현황·품질, 수요처 등의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생산자와 수요자를 직접 연계하는 정보시스템인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2004년 6월부터 추진하여 2005년까지 구축할 예정에 있어 2006년부터는 순환골재의 수급조절서비스, 유통정보서비스 및 거래지원서비스 등을 민간에 지원함으로써 순환골재의 유통을 활성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하여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와 재활용에 관한 각종 정보와 행정서비스도 병행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그림 3> 건설폐기물(순환골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도